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지급〉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09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지급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 보조, 용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지급(안 제10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소형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u>소유자에게 필요한</u>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 ----- <u>소유자에 대하여</u> 다음 각 호의-----. 1. <u>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소형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u> 2. <u>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용</u>
<u><신 설></u>	

<신 설> <신 설>	자 또는 용자알선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10조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²⁾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환경친화적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금을 용자 또는 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급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통상 1.5배에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용자 또는 용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배정도 높은 전기자동차의 차량가격³⁾을 고려하여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구매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및 전체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전기자동차 중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중·대형의 경우 최대 650만원, 소형 이하(경형 포함)의 경우 최대 550만원, 경형 중 초소형의 경우 250만원을 지원 한도로 규정하고,

차량의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각각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하고 있으며, 초소형의 경우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25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원 정책 체계에서는 소형 및 중·대형 전기승용차 구입 시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여, 중·

3) 일례로 현대차 코나의 국내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기준 2,256만원부터 시작하나, 코나의 전동화 모델인 코나EV의 경우 시작 판매 가격이 4,45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전기차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주된 요인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성장률...“전기차 시장 이렇게 얼어붙을 줄이야”, 이코노미스트, 2023. 10. 9.)

대형차에 비해 소형차의 차량가격 대비 보조금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⁴⁾에서는 소형 전기승용차의 등록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소형차 구매 수요가 전기승용차의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제조사가 소형 전기승용차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탄소 중립 정책의 주요과제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4) 최근 5년간 전기차 차종 및 크기별 신규 등록대수 (2020년~2024년)

차종	크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승용	경형	1,857	2,209	1,670	3,989	7,428
	소형	-	-	-	-	-
	중형	29,402	69,273	122,102	111,767	60,404
승합	소형	-	-	-	-	-
	중형	181	165	276	414	123
	대형	827	1,106	1,799	2,401	1,276
화물	경형	139	811	790	103	51
	소형	14,169	26,737	37,670	43,782	11,192
	중형	-	-	1	5	-
특수	경형	-	-	-	-	2
	소형	48	51	16	32	16
	중형	-	3	-	14	-
총계		46,575	100,301	164,308	162,461	80,476

※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차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증대시키는 한편, 전기자동차의 가격 장벽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 및 실용적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⁵⁾ 중 “소형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의 구분은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5종류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¹⁶⁾에서는 5종류의 차종 모두를 다시 경형(초소형, 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소형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 보조금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소형 승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소형에 해당되는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됨.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는 그 종류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구분되고,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경형(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됨.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5종의 차종으로 구분하고, 5종의 차종 모두를 다시 경형(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이 모든 차종의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차량의 98% 이상이 소형인 전기 화물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소형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차종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종류에는 이륜자동차가 제외⁷⁾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형 전기자동차에 한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급(경형, 중·대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은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7) 전기자동차의 종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만을 나열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는 제외됨.

또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은 대·내외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련 내용을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정책 수행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6